

의안번호	2202998
의 퇴 인	이상식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9.
추 계 번호	24D2707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2억 6,000만원(연평균 20억 5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(안 제17조제2항제5호 등 신설)	10,260	-	-	-	-	10,260	2,052

주: 1. 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(안 제17조제2항제5호 등 신설)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2. 개정안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개 지방소방본부가 각 1대씩 버스형태의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2026년 한 해 동안 제작 마련하는 것으로 가정
3. 이동식 안전체험관 1대의 제작비용은 2023년 기준 5억 600만원(소방청 자료)이며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제2항제5호·제6호(소방교육·훈련)	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¹⁾ 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,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²⁾ 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포함하도록 규정	재량규정

1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아동양육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, 양육 및 취업훈련,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아동일시보호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7조제2항제5호·제6호(소방교육·훈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개 지방소방본부가 각 1대씩의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2026년 한 해 동안 제작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

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3. 아동보호치료시설: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 - 가.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- 나. 정서적·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·치료하는 시설
 4. 공동생활가정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5. 자립지원시설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 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6. 아동상담소: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, 치료,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구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 8. 지역아동센터: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 9. 아동보호전문기관
 10.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
 11.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
 12.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
- 2)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노인주거복지시설
 2. 노인의료복지시설
 3. 노인여가복지시설
 4. 재가노인복지시설
 5. 노인보호전문기관
 6.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
 7.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- 소방청은 개정안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으로 버스형태의 이동식 안전체험관이 적합하다는 의견
 - 소방청 등은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각 지역의 소방서의 안전체험교실, 소방안전체험관, 버스형태의 이동식 안전체험관(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)을 활용하여 수행
 - 다만, 이동식 안전체험관으로 총 56대의 버스를 운영 중이나 부족하다는 소방청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라 19개 지방소방본부에 각 1대씩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등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지방소방본부가 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2026년 한 해 동안 총 19대의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제작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
- 2023년 6월 현재 소방청은 총 56대의 버스로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이나 부족하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라 19개 지방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

3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

- 이동식 안전체험관 1대를 제작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5억 600만원(소방청 자료)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
- 추계결과, 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2억 6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아동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: 2026~2030년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이동식 안전체험관 제작 수량(A, 대)	19	-	-	-	-
1대당 제작비용(B, 백만원)	540	-	-	-	-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10,260	-	-	-	-

주: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19개 지방소방본부가 1대씩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